

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992. 11. 20

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류명희 의원의 8인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2. 11. 19

· 회부일자 : 1992. 11. 19

다. 상정일자 : 제85회 정기회

제1차 산업위원회 (92. 11. 20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류명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대응책으로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을 우선 소득 향상쪽으로 덜어주기 위하여 새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
- 농어촌 지도자들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본 조례의 제정으로로서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조성 운영 관리

- 기금 조성
 - 일반회계 전입금
 - 금융기관 차입금
 - 용자금의 상환금 및 운영 차입금
- 기금지원 대상자
 - 4-H 회원, 농어민후계자, 농촌지도자, 새마을 지도자, 기타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
- 기금지원 대상분야
 - 소득개발 사업
 - 수출작목 개발육성 사업
 -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기금지원 (용자)액 : 1천만원 ~ 2천만원
- 용자금 상환 이율
 - 1년 거치 3차 평균 상환
 - 년 3%
-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(도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)
 - 개발기금 운영 및 결산
 - 사업비 지원, 용자금 회수, 결산, 감독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허 회)

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농어민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을 지키면서 소득개발을 위한 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자에게 저리로 사업자금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격인 본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점차 시행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 개선한다면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내용과 같이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

· 김진학 의원

- 제8조 제2항 자구수정요구 : 농협의 → 농업협동조합에서 적용하는

- 제11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각각 변경

6. 수정안의 요지

” 토론요지와 같음 ”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1부

나. 수정안 조문대비표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 (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)</p> <p>① -----</p> <p>② ----- 농협의 -----</p> <p>제11조 (세입, 세출)</p> <p>① -----</p> <p>1. -----</p> <p>2. -----</p> <p>3. 농촌지원 관련기관 단체 와 참여희망자가 자진 기탁한 성금 및 출자금</p> <p>4. -----</p> <p>5. -----</p>	<p>제8조 (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)</p> <p>① -----</p> <p>② ----- 농업협동조합에서 적용 하는 -----</p> <p>제11조 (세입, 세출)</p> <p>① -----</p> <p>1. -----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 삭 제 "</p> <p>3. -----</p> <p>4. -----</p>